

시청자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17. 09. 01.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한과 직무)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②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③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제3조 (구성 및 임기) ①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후보자 공모) ① 후보자 공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
- ② 후보자 공모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며, 제출서류(이력서, 추천단체 추천서 등)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결격사유, 임기, 연임가능 여부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후보자 공모결과 접수자가 선정인원 대비 적은 경우 또는 추천이 없는 단체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위원회 구성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후보자 추천) ① 후보자는 방송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다음의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.

1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

2. 소비자보호단체
3. 여성단체
4.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
5. 변호사단체
6. 방송·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·학술단체
7.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8.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
9.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
10. 과학기술관련 단체

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해당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
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정관이 있을 것

제6조 (결격사유)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1. 당사와 연계된 방송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
2.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3. 정당법에 의한 당원
4. 기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7조 (후보자 선정)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인원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8조 (위원선정)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
② 선정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준법지원인을 포함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 선정시 특정 단체의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제10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시청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록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- ⑤ 시청위원회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예산 집행) 시청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청자위원에게 회의관련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제12조 (당사의 의무) 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②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③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위원의 해촉) ① 위원 본인의 사정으로 해촉을 희망 할 경우

②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

③ 위촉 이후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, 기타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